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백 영 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법현상에 대하여서는 투쟁은 엄격하게 하면서도 그 처리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여 이 합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5폐지)

손해보상법상 가해자의 가해행위외에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잘 아는것은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엄격하게 하면서도 그 처리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는데 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불법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가해자의 가해행위외에 여러가 지 요인이 작용한 경우 그것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손해보상책임을 지워야 한다.

손해보상법상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입은 손해결과발생에 가해자의 가해 행위뿐아니라 피해자의 허물이나 제3자의 허물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을수 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제외하고 만일 손해결과발생에 미치는 요인중에 피해 자의 허물이나 제3자의 허물 등이 포함되여있을 때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 과관계는 부정될수 있다.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동시에 혹은 가해행위가 있은 후에 손해발생에 작용하는 가해행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포함된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피해자의 허물이나 제3자의 허물, 자연적요인, 동물에 의한 침해가 포함될수 있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보다먼저 피해자의 허물이 속할수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허물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보상책임은 경 감되거나 면제될수 있다.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가지고있고 가해자에게는 경한 과실만 존재하는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될수 있으며 이때에는 피해자의 행위로 하여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결과사이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고 피해자에게는 오직 경한 과실만이 존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보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만일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자모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현상으로 보고 피해자 각자의 원인의 크기나 허물정도를 고려하여 책임을 분담시킬수 있다.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피해자의 허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 제들에 류의하여야 한다.

우선 피해자의 육체가 가해자의 강제를 받는 상태에서 손해를 일으킨 경우 그 행위 결과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책임지지 않고 가해자가 전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육체적강제와 류사한 경우로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히 자극시키거나 기절하게 하고 또는 수면상태에 빠지게 하는것 등이 포함될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피해자가 한 행위의 손해결과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보상책임을 지워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로부터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하다 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피해자가 자기의 적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된것이라면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한 행위가 공정한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선택된 행위로 하여 피해자본인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을 줄 때의 요인은 결과발생의 원인으로 판단할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것은 피해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야 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의사로부터 출발하여 수행한 행위로 하여 발생된 손해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로부터 다른 사람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리익을 구원하기 위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수 없다. 이 경우 가해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상해를 줄수 있는것을 막기 위하여 구조행동을 취할수 있다는것을 예견하여야 했으므로 구조자가 입은 상해는 가해자의 과실행위로 인한 가능한 결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음으로 제3자의 허물이 속할 수 있다.

제3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리용하여 고의적으로 수행한 적극적인 행위 또는 소극적행위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수 있다. 즉 제3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리용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만 지울수 없으며 이러한 제3자의 행위를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판단할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수 있으며 발생된 재산상손해에 대하여서는 제3자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자의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와 위법적인 행위의 두 측면에서 판단할수도 있고 고 의와 과실을 결합시켜 판단할수도 있다.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의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라면 그것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수 없다. 그러나 제3자의 행위가 위법적인 행위라 면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결과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수 있다.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의 위법적인 행위가 고의적인 행위인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유무는 가해자가 제3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예견할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가해자가 제3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예견할수 있었다면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수 없으며예견할수 없었다면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수 있다. 제3자의 위법적인행위가 과실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수 없다.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제3자의 허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류의하여야 한다.

우선 제3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로부터 자기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야 한다.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3자가 그 침해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의 행위는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류의할것은 제3자의 행위 그자체에도 허물이 존재할수 있다는것이다. 단지 제3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하여 손해보상책임에서 면제된 다면 그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것으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제3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 로부터 자기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반 드시 그 합리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로부터 다른 사람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제3자가 입은 피해사이의 인 과관계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수 없다.

또한 제3자의 위법적인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지니고있는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것으로 하여 재산상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무위반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자의 위법적인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지니고있는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그것으로 하여 발생된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수 없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음으로 자연적요인이 속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요인들은 설사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뒤따라 발생한것이라고 해 도 가해자의 손해보상책임을 면제시킬수 없다. 그러나 례외적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자연적인 요인의 결합이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수 있는 경 우가 있을수 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수 있는 자연적인 요인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하여 발생한 손해결과와 자연적요인이 우연적으로 결합되여 최종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속할수 있다. 실례로 한사람이 과실로 산림과 떨어져있는 건물에 화재를 일으켰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불찌들이 날아가 산불을 일으킨 경우를 들수 있다. 이 경우 태풍이 불지 않았더라면 산불을 일으킬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것이라는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가해자가 건물에 화재를 일으킨 행위와 산불이 일어난것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수 있다. 즉 가해자에게는 건물에 화재를 일으킨 행위에 대하여서는 손해보상책임을 지울수 있지만 산불이 일어나 발생된 재산상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상책임을 지울수 없게 된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기의 가해행위와 자연적인 요인의 결합을 추구하거나 계획한것으

로 하여 최종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수 없다. 실례로 가해자가 중앙기상예보를 통하여 언제 어느 지역에서 태풍이 불것이라는것을 알고 화재를 일으켜 많은 재산상손해를 준 경우를 들수 있다. 이 경우 태풍이 부는것은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현상이지만 가해자가 화재를 일으킨 행위와 태풍과 화재의 결합으로 조성되는 손해결과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수 없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동물에 의한 침해가 속할수 있다. 동물에 의한 침해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 없는가는 두가지 경우를 놓고 판단할수 있다.

우선 동물에 의한 침해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이다.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동물에 의한 침해가 우연히 결합되여 비정상적인것으로 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결합이 피해자에게 최종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동물에 의한 침해 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최종적인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 로 될수 있다. 여기서 류의하여야 할것은 가해자가 반드시 동물에 의한 침해를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가해자가 동물에 의한 침해를 예견할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동물에 의한 침해를 리용하였다면 그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물에 의한 침해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의 영향을 받으며 그것이 손해결과발생의 시초적인 원인으로 되는 경우이다.

동물에 의한 침해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이의 인파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 하는것은 이러한 행위가 동물의 본능에 부합되는가 하는데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동물의 본능에 대한 인식은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나 사람들의 생활경험에 따라 판단할수 있다. 만일 동물에 의한 침해가 그 본능에 모순되는것이라면 가해자의 과실적인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수 있다. 그러나 동물에 의한 침해가 그 본능에 부합되는것이라면 가해자의 과실적인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수 없다.

가해자의 가해행위외에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용하는것은 발생된 민사분쟁사건을 정확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옳게 적용함으로써 민사법률관계당사자들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원만히 보호하고 온 사회 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할것이다.